

수원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0나941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0나9415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8가단561356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S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규

피고, 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서하원

변론 종결2022. 2. 23.

판결 선고2022. 3. 23.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8가단561356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92,322,960원 및 그 중 55,380,750원에 대하여 2008.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사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1. 29.자 상속을 위한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 7. 8. 접수 제969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 B을 상대로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24. "피고 B은 원고에게 92,322,960원 및 그 중 55,380,750원에 대하여 2008.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9. 1. 2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5. 1. 2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E, 자녀들인 피고들, F,

G이 있었다.

다. E, 피고들, F, G은 2015. 1. 29.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피고 C	317,500,000
청주시 서원구 H 대 71㎡ 중 1/35 지분	E	234,3002) = 1㎡당 개별공시지가 115,500원 × 71㎡ × 1/35 지분
화성시 I 답 1,158㎡	G	67,164,0003) = 1㎡당 개별공시지가 58,000원 × 1,158㎡
화성시 J 임야 10,909㎡ 중 1/4 지분	G	40,908,7504) = 1㎡당 개별공시지가 15,000원 × 10,909㎡ × 1/4 지분
화성시 K 답 2,856㎡	G	117,096,0005) = 1㎡당 개별공시지가 41,000원 × 2,856㎡
상속재산 금액 합계		542,903,050

라.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 7. 8. 접수 제96931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4,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 B에게 금전청구를 한다.

나. 피고들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 된 것으로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본안 전 항변).

2) 망인은 2001. 6. 5. 아내인 E를 통해 피고 B이 L으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T건물(이하 'T건물'라고만 한다) U호, V호를 분양받음에 있어,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W으로부터 대출받은 144,000,000원을 포함한 300,000,000원을 L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해주었는바, 이에 따르면 적어도 위 144,000,000원은 망인이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망인은 사망 이전에 E를 통해 2013. 12. 23.부터 2014. 12. 11.까지 피고 B의 아들 M의 유학자금 명목으로 합계 54,646,914원, 2000. 1. 21.부터 2004. 1. 13.까지 피고 B에게 합계 20,308,000원을 각 증여하였는바, 이는 피고 B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다른 상속인들과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 B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사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만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 B에 대한 금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금인 '92,322,960원 및 그 중 55,380,750원에 대하여 2008.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원고는 2018. 10.경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추심을 상담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C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12. 21.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피고 B의 무자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루어질 당시
이미 성립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고 한다)이 된다. 나아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 이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한편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참조),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결정 참조).

나) 피고 B의 구체적 상속분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피고 B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여 과소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공동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와, 자녀인 피고들, F, G이 있으므로, 그 법정상속분은 E가 3/11, 피고 B 등 나머지 자녀들은 각 2/11가 된다.

(2)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으로 앞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합계 542,903,050원 상당의 각 부동산이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앞서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각 부동산 중 화성시 X면 소재 3필지의 부동산(G에게 상속된 부동산)은 민법 제1008조의3에서 정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내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이고, 이는 제사 주재자인 G에게 승계되므로, 이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3필지의 부동산이 민법 제1008조의3에서 규정한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라거나, G이 제사 주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B의 특별수익의 존부 및 가액

갑 제2호증, 을 제10,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은 L, Y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T건물 U호, V호에 관하여 2001. 6.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E는 2001. 6. 5. 주식회사 W으로부터 144,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망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2001. 5. 30. 주식회사

W을 위하여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72,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W'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③ E는 위 대출 당일인 2001. 6. 5. 주식회사 W에서 L 명의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④ E의 위 대출 및 송금경위,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L에게 송금한 300,000,000원에는 E가 같은 날 주식회사 W으로부터 대출받은 144,000,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E가 피고 B와 무관하게 300,000,000원을 L에게 송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⑥ E의 위 송금은 E의 개인재산이 아닌 망인과 E가 부부로서 함께 생활을 영위하며 형성한 공동재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이 중 위 144,000,000원이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다만 그 공동재산의 귀속 관계를 알기 어려워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라 망인과 E가 그 공동재산을 1/2씩 공유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위 300,000,000원 중 1/2에 상당한 금원은 실제로는 망인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E가 L에게 300,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 B와 L, Y 사이의 T건물 U호, V호에 관한 매매 내지 분양계약의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B이 망인이나 E에게 이를 변제하였다는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이는 피고 B에 대한 증여로 평가되는데, 그 중 적어도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144,000,000원은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망인이 E를 통해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망인의 피고 B에 대한 144,000,000원의 증여는 그 지급경위, 액수,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차 피고 B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 144,000,000원은 피고 B이 특별수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참조), 따라서 그 특별수익한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특별수익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특별수익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며,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특별수익한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또한 이때의 환산 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 B이 증여받은 매매대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특별수익재산액×(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특별수익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B이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현금의 가치를 계산하면, 피고 B이 2001. 6. 5. 수익한 144,000,000원의 가치는 205,761,698원[= 144,000,000원 × (2015년 GDP 디플레이터 106.636/2001년 GDP 디플레이터 74.628)],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항소이유서에서 E가 피고 B의 아들 M의 유학자금으로 지급한 합계 약 54,646,914원, 피고 B에게 지급한 합계 20,308,000원도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다만 피고는 그 후 제출한 2021. 12. 13.자 준비서면에서는 이 부분 금액을 특별수익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이는 위 각 돈의 지급명목 및 기간, 지급액수, 망인 및 E와 피고 B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망인의 피고 B에 대한 증여라거나, 증여라 하더라도 이를 피고 B이 특별수익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 B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

앞서 본 망인의 상속재산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하고, 여기에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각 법정상속분액을 산정하며, 다시 여기서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피고 B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간주상속재산에 따른 법정상속분액보다 특별수익액이 더 커서 결국 피고 B 몫의 구체적 상속분은 남아있지 않음이 인정된다.

○ 간주상속재산: 748,664,748원(=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 합계 542,903,050원 + 피고 B의 특별수익 205,761,698원)

○ 피고 B의 법정상속분액: 136,120,863원(= 간주상속재산 748,664,748원 × 피고 B의

법정상속분 2/11)

○ 피고 B의 구체적 상속분: 0원(법정상속분액 136,120,863원 - 특별수익 205,761,698원 < 0
이므로, 피고 B의 구체적 상속분은 남아있지 않음)

다) 결국 피고 B의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분할협의를 피고 B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나아가 갑 제5호증, 을 제5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체적인 지급경위가 어찌 되었든 피고 B은 망인이 살아있을 당시 E로부터 374,954,914원(앞서 인정된 300,000,000원 및 피고 B 및 피고 B의 아들인 M에게 지급된 합계 74,954,914원)을 지급받았는바, 이에 피고 B은 이미 망인과 E로부터 자신의 몫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분할협의에서는 피고 B 뿐 아니라 상속인 중 1인인 망인의 다른 자녀 F도 상속재산 분배에서 제외되었고, 망인의 처인 E도 234,300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만 상속받고 나머지 상속권리를 모두 포기하였는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피고 B의 채무면탈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성립된 날로부터 6년이나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염기창

판사김문성

판사정승화

별지

있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시가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어 상속개시 당시의 해당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을 제1 내지 4호증)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였다.

2) = 1m^2 당 개별공시지가 115,500원 $\times$ 71m^2 $\times$ 1/35 지분

3) = 1m^2 당 개별공시지가 58,000원 $\times$ $1,158\text{m}^2$

4) = 1m^2 당 개별공시지가 15,000원 $\times$ $10,909\text{m}^2$ $\times$ 1/4 지분

5) = 1m^2 당 개별공시지가 41,000원 $\times$ $2,856\text{m}^2$